

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
의안 번호	3724
----------	------

제안연월일 : 2009. 2. 5.
제안자 : 정치개혁특별위원장

1. 대안의 제안경위

- 가. 2008년 11월 13일 김성곤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주민투표법 일부개정 법률안」 과, 2008년 12월 23일 권경석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주민투표 법 일부개정법률안」 이 2009년 1월 12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회부 되어 왔음.
- 나.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제280회 국회(임시회) 제2차위원회(2009. 1. 20)에 이들 법률안을 각각 상정하여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.
- 다.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제280회 국회(임시회) 제1차위원회(2009. 1. 22) 및 제2차위원회(2009. 1. 29)를 개최하여 각각의 법안을 심사한 결과, 두 법안의 내용을 통합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.
- 라. 제280회 국회(임시회) 제3차위원회(2009. 1. 29)에서 2건의 법률안 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, 이를 통합하여 위원회 대 안을 의결함.

2. 대안의 제안이유

주민등록만을 요건으로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은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국내거주 재외국민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(2007. 6. 28. 2004헌마643)에 따라 국내 거주 재외국민도 국내거소신고를 하면 주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, 현행 20세로 되어 있는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국민투표 및 공직선거권자의 연령과 일치하도록 만 19세로 조정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- 가. 국내거주 재외국민도 국내거소신고를 하면 주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(안 제5조제1항).
- 나.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국민투표 및 공직선거권자의 연령과 일치하도록 만 19세로 조정함(안 제9조제2항).

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

주민투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,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.

① 19세 이상의 주민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주민투표권이 있다. 다만, 「공직선거법」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에게는 주민투표권이 없다.

1.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또는 「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재외국민
2.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

격(체류자격변경허가 또는 체류기간연장허가를 통하여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람

제6조제1항 중 “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(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발의일을 말한다)”을 “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(투표일 전 19일을 말한다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투표인명부에 등재되어 있는”을 “투표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”으로 한다.

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(이하 “주민투표청구권자”라 한다)”를 “19세 이상 주민 중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(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주민투표권이 없는 자는 제외한다. 이하 “주민투표청구권자”라 한다)”으로 한다.

제9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주민등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에 의하여”를 “주민등록표,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표 및 외국인등록표에 따라”로 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에 대한 경과조치)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의 시행 후 1개월 이내에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산정한 주

민투표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하여야 한다.

③(이 법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주민투표에 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주민투표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주민투표권행사의 보장) ① 생략) <u><신설></u></p> <p>② (생략)</p> <p>제5조(주민투표권) ① <u>20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(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권이 없는 자를 제외한다)는 주민투표권이 있다.</u></p>	<p>제2조(주민투표권행사의 보장) ① 현행과 같음)</p> <p>② <u>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③ (현행 제2항과 같음)</p> <p>제5조(주민투표권) ① <u>19세 이상의 주민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주민투표권이 있다. 다만, 「공직선거법」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에게는 주민투표권이 없다.</u></p> <p>1. <u>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또는 「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</u></p>

②20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(체류자격변경허가 또는 체류기간연장허가를 통하여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갖춘 자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자는 주민투표권이 있다.

③ (생략)

제6조(투표인명부의 작성 및 확정) ①주민투표를 실시하는 때에는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(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발의일을 말한다)부터 5일 이내에 투표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.

신고가 되어 있는 재외국민
2.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(체류자격변경허가 또는 체류기간연장허가를 통하여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람

<삭 제>

② (현행 제3항과 같음)

제6조(투표인명부의 작성 및 확정) ①-----
-----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(투표일 전 19일을 말한다)-----

-----.

②투표인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국내거주자중 투표일에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자는 투표인명부작성기간 중에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다.

③ (생략)

제9조(주민투표의 실시요건) ① (생략)

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(이하 “주민투표청구권자”라 한다)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 이상 5분의 1 이하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.

1.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0세 이상의 주민(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권이 없는 자를 제외한다)

2.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

②투표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-----

-----.

③ (현행과 같음)

제9조(주민투표의 실시요건) ① (현행과 같음)

②19세 이상 주민 중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(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주민투표권이 없는 자는 제외한다. 이하 “주민투표청구권자”라 한다)-----

-----.

<삭 제>

<삭 제>

<p><u>하는 외국인</u></p> <p>③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<u>주민등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에 의하여</u> 산정한다.</p> <p>④ ~ ⑥ (생략)</p>	<p>③----- -----</p> <p><u>주민등록표,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표 및 외국인등록표에 따라</u> -----.</p> <p>④ ~ ⑥ (현행과 같음)</p>
--	--

